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편집인 공보실장 최철호
 인쇄국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차 례

△조 례..... 13169

- 제 450 호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 제 451 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 제 452 호 서울특별시립 갱생원 설치조례중 개정
- 제 453 호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

△규 칙..... 13177

- 제 593 호 길음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적 정리 위원회 규칙
- 제 594 호 도로 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규칙중 개정
- 제 595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
- 제 596 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
- 제 597 호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위원회 규정
- 제 598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위원회 규칙
- 제 599 호 서울특별시 경찰지서 및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위치와 관할 구역의 건중 개정
- 제 600 호 서울특별시 법제심의 위원회 규칙중 개정

△훈 령..... 13186

- 제 223 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및 소방서 사무분장 규정중 개정

△사 령..... 13187

△고 시..... 13197

- 제 1067 호 결핵 및 부루세라병검색 "지시"

(2) 차 례

- 제 1068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69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70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71호 사료성분 등록 갱신
- 제 1073호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74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75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76호 사망지정지 해제
- 제 1077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78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79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80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81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82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 제 1083호 동사무소 위치 변경 고시

△공 고..... 13205

- 제 142 호 사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처분
- 제 143 호 환지처분
- 제 144 호 토지 세목 공고(경정)
- 제 145 호 제2 재산(차량·비품집기)매각
- 제 146 호 도로운송 차량의 임시 검사 실시
- 제 147 호 성산토지 구획정리지구 지구제 일부 변경
- 제 148 호 제2 재산(시설·차량·비품집기)매각
- 제 149 호 환지처분 일부변경
- 제 150 호 세목 공고
- 제 151 호 세목 공고
- 제 152 호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시험 실시
- 제 153 호 세목 공고

- 제 154 호 사유건물 철거조건부 매각 처분
- 제 155 호 자동차 운수사업소 종업원 모집
- 제 156 호 제주도 재산(토지)매각
- 제 157 호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른 전차운행제한 변경
- 제 158 호 인구센서스에 대한 시장 담화문
- 제 159 호 제주도 재산(시설·차량·비품집기)매각계약체결 및 유찰재산 재입찰
- 제 160 호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 제 161 호 환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광 고..... 13226

- 1. 제3회 울릉 위험물 취급주임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 2. 직인 개각 통보

조 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0號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洞名稱 및 區域劃定 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區 名	洞 名	地 番
永 登 浦 區	新 吉 洞	74
	◇	131
	◇	山 28의 1

(4) 초 례

永 登 浦 區	新 吉 洞	山 24의1
	◇	131의1
	◇	127의2
	◇	126의1
	◇	126의7
	◇	126의8
	◇	126의9
	◇	129의5
	◇	129의6
	◇	126의10
	◇	126의11
	◇	130의1
	◇	130의3
	◇	山 25中
	◇	山 20의1
	◇	山 20의4
	◇	山 20의5
	◇	山 24의18
	◇	山 24의17
	◇	山 24의3
	◇	山 24의7
	◇	山 24의8
	◇	山 24의9
	◇	山 24의10
	◇	山 24의11
	◇	山 24의13
	◇	山 24의4
	◇	山 24의14
	◇	山 24의12

永登浦區	新吉洞	山 24의15
	◇	山 24의16
	◇	130의2
	◇	127의1
	◇	129의3
	◇	129의4
	◇	129의2
	◇	129의1
	◇	山 24의2
	◇	山 17의2
	◇	山 20의10
	◇	山 20의9
	◇	山 20의7
	◇	山 20의6
	◇	山 20의8
	◇	山 20의3
	◇	山 23
	◇	山 20의2
	◇	山 24의5
	◇	山 24의6
	◇	山 21의2
	◇	山 22
	◇	山 21의1
	◇	山 8의3
	◇	84의2
	◇	84의1
	◇	山 8의5
	◇	79의3
	◇	83의1

9277

〔 6) 조 매

永 登 浦 區	新 吉 洞	83
	◇	83의2
	◇	79의6
	◇	82의5
	◇	82의7
	◇	84
	◇	82의31
	◇	82의24
	◇	82의25
	◇	82의23
	◇	82의6
	◇	82의30
	◇	81의1
	◇	79의8
	◇	79의9
	◇	79의7
	◇	79의2
	◇	82의11
	◇	79
	◇	80
	◇	79의4
	◇	79의5
	◇	山3의4
	◇	79의1
	◇	79의10
	◇	78의1
	◇	77의2
	◇	82의4
	◇	76의2

永登浦區	新吉洞	81의2
	◇	81의3
	◇	77의6
	◇	山3의5
	◇	77의9
	◇	77의8
	◇	77의7
	◇	77의1
	◇	78의2

를 永登浦區大方洞으로 編入

區名	洞名	地番
永登浦區	大方洞	115의1중
	◇	208의1중
	◇	119의12
	◇	119의4
	◇	119의18
	◇	119의16
	◇	119의17
	◇	119의5
	◇	119의15
	◇	119의11
	◇	9
	◇	119의10
	◇	119의13
	◇	119의14
◇	115의2	

를 永登浦區 新吉洞으로 編入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1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1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 第10條 (賦割制) ① 觀覽料를 徵收하는 有料入場의 境遇는 觀覽料收入額의 2割의 該當額을 使用料로 하고 觀覽料收入額이 基本額에 未達할때는 基本額을 徵收한다
- ② 前項의 賦割制에 依한 1回使用料 總額20萬圓을 超過할때는 體育競技에 限하여 第16表에 依한다
- ③ 前1項에 依한 基本額徵收에 있어 무로競技는 2割增額, 高等學校以下의 競技는 2割리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 (使用料의 減免) 市長이 公用, 公益또는 其他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때는 使用料를 減免할수 있다

다만 무로競技時의 使用料의 減額은 5割을 超過하지 못하며 特別한 事由라 함은 따로 規則으로 定한다

使用料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第4表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野球場을 專用으로 使用하지 아니하고 練習을 爲하여 利用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다

區	分	時 間	料 金
團體가 練習을 爲하여 利用할때		2時間當	600圓

使用料表 第八의 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各競技場에서 商行為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다

種	別	區 分	期 間	基 本 額	備 考
T	푸로레스링	國際競技 國內 ∕	1 회	20,000원 5,000	
	푸로 권투	國際 ∕ 國內 ∕	∕	20,000 5,000	
V	體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野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中 繼 放 送	蹴 球	國際 ∕ 國內 ∕	∕	12,000 3,000	
	排 球	國際 ∕ 國內 ∕	∕	6,000 1,500	
放 送	아마추어 권투	國際 ∕ 國內 ∕	∕	8,000 2,000	
	其 他 競 技	國際 ∕ 國內 ∕	∕	2,000 500	
映 畫 撮 影		1回當 10,000원			
中 繼 放 送		TV中繼의 半額으로 한다			
競 技 撮 影		TV中繼放送金額으로 한다			
宣傳·廣告·揭示·展 覽·物件貸與		契約者의 年間計劃書에 依한 總收入金의 2%			
其 他 行 爲					

第十一 附屬設備使用料

(1) 運動場(體育館包含)의 附屬設備을 使用할때에는 下表에 依하여 別途 徵收한다

(10) 조 례

	種 別	區 分	金 額	摘 要
第 十 七 表	野球場라이다設備 使用料	1 回	電氣使用料基本額 25,000원 競技日의電 氣使用料(官許料金)	1時間以內일때에도 1時間으로看做한다
	擴 聲 機	1 回	500원	
	競 技 場 照 明	KW	官許料金	
	冷 房	〃	〃	
	난 방	1時間	1,700원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갱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조례제452호

서울특별시립 갱생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갱생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21세부터 64세 미만”을 “18세부터 64세 까지로”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산 31의 7”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산동 산 6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동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조례중 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조례제453호

서울특별시 구 동 파월장병 지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 동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간사는 서울특별시 공보실장, 구공보계장과 동 사무장이 된다”
를 “서울특별시 사회과장 구사회과 후생계장 동 사무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 地籍整理委員會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3號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地籍整理委員會規則

第1條 (目的) 吉音宅地造成事業地區의 地籍整理 및 이로 因하여 惹起되는 地籍에 關한 事項을 處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 委員會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地區境界 確定 및 錯誤 是正에 關한 事項
2. 地區內 地籍錯誤是正 및 整理에 關한 事項
3. 地籍錯誤로 因하여 惹起된 諸般問題處理에 關한 事項

第3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委員若干人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都市計劃局長이 되며 委員은 庶務課長, 稅政課長, 區劃整理課長, 庶務課處分係長, 稅政課地籍係長, 區劃整理課換地係長이 된다

第4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② 委員長 有故時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이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 (議事)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召集하고 그議長이 된다

② 會議은 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場合에는 委員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6條 (關係人의 出席) 委員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및 關係人을 會議에 出席시켜 그 意見を 聽取할 수 있다

第7條 (幹事와 書記)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庶務課와 稅政課 職員中에서 各各 幹事1人和 書記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와 書記는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幹事は 委員長의 命을 받아 技術問題에 關하여 委員을 補佐하며 書記는 會議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8條 (合議錄作成) 會議을 開辦하였을 때에는 會議錄을 備置하고 會議錄에는 參席委員이 署名하여야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道路交通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西紀 1966年 9月 5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특별시規則第594號

道路交通法에 依한 制限指示에 關한 規則中 改正

三. 運轉者에 遵守事項 "차"項 다음에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카. 諸車 運轉者는 開門發車運轉(停車前 開門包含)을 할 때는 運轉免許에 對하여 行政處分(免許停止處分)을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규칙제59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3급을류란의 "지방행정사무관 186"을 "지방행정사무관 189"로 "지방농업기과 2"를 "지방농업기과 1"로 "3급

율류 계 317"을 "3급 율류 계319"로 한다

5급감류란의 "지방행정서기 1116"을 "지방행정서기 1115"로 "5급감류계 1679"를 "5급감류계 1678"로 한다

5급율류란의 "지방행정서기보 1559"를 "지방행정서기보 1558"로 "5급율류 계 2416"를 "5급율류 계2415"로 한다

"기능직 계843"을 "기능직 계832"로 "고용원 계1062"를 "고용원 계107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규칙제596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기획관리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획관리관) 1)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관·법무관·통계관과 감사관을 두고

기획관리관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기획관과 감사관은 행정서기관으로 법무관은 법무관 또는 행정서기관 통계관은 통계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 5항을 다음과 같이 가한다

5) 감사관 밑에 감사제1담당관 감사제2담당관 과 감사제3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제1담당관

가. 감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나.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14) 규 칙

다. 각종 감사자료의 모집

2. 감사제2담당관

가. 회계감사와 동감사에 대한 자료모집 및 계획수립

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등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준비 및 사후처리

3. 감사제3담당관

가. 비위판계(진정 투서 기타)조사

나. 비위공무원의 조사 및 징계제청(재 복무에 관한사항)

다. 특명감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내무국) 1) 내무국에 총무과 행정과 인사과와 예산과를 둔다

2) 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과 인사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재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 2 (감사과)를 삭제한다

제30조 (청소제1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청소제1과) 1) 청소제1과에 서무계 작업계와 장비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청소제1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나. 청소관계 법규정비

다. 진개차량의 각종 사고보장

라. 오물수거 수수료 과징

마. 진개매각대 수수료 과징

바. 청소장비 및 용품구입

사. 과내 서무 및 국내 타과 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계

가. 진개처리 및 처분장 조정

나. 청소구역 책정

- 다. 오물 불법처분 감시 단속
- 라. 청소인부 감독
- 마. 오물 취급업 허가
- 바. 시민 청소관념의 계몽
- 시. 진개수거에 관한 청원서 처리

3. 장비계

- 가. 청소차량 관리 운영
- 나. 기계 기구류 계량 수선
- 다. 수하차와 관리 운동
- 라. 청소차량 대체계획
- 마. 청소차량 및 기계장고의 시설 및 관리
- 바. 청소차량등 유류 배정 및 조정
- 사. 살수차 운영 관리 및 배정

부 칙

이 규정은 서기 1966년 9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규칙제597호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위원회 규칙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의 주요가로에 대한 명칭을 제정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 (1) 가로명제정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 (2) 가로명 제정안의 심의 의결
- (3) 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사학자3인, 언론인2인, 법조인2인, 문인2인, 경제인2인과 일반시민3인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소위원회 구성) (1) 위원회에 상정할 제안건의 예비심사와 시안작성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리관과 각국장 이 된다

제 6 조 (소위원회 직무)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로명제정시안의 작성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자료의 결정

(3)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 7 조 (의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2)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8 조 (의견조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소속 각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의할수 있다

제 9 조 (간사,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내무국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과시정연구계장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 自動車 運轉免許試驗委員會 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8號

서울特別市 自動車運轉免許試驗委員會規則

第1條 (目的) 道路交通法 第55條 및 同法施行令 第39條 乃至 第45條에 依한 自動車 運轉免許試驗事務의 適正을 期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 自動車 運轉免許試驗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1人과 委員 3人以上 6人 以內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警察局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交通課長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中에서 市長이 委屬한다

1. 工業高等學校以上 卒業者로서 在學中 機械에 關한 學科를 修習하고 自動車 構造 및 取扱方法 敎習에 1年以上 從事한 者
2. 道路運送車輛法 第12條에 依한 自動車檢査公務員
3. 自動車交通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는 警察公務員
4. 自動車構造 및 取扱方法에 權威있고 專門의인 知識을 가진者

第3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運轉免許試驗實施計劃樹立
2. 筆記試驗問題出題
3. 筆記試驗 및 技能試驗實施
4. 其他試驗施行에 關한 事項

第4條 (委員長의 職務)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하며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 (委員의 職務) 委員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試驗事務를 處理한다

第6條 (會議 및 議決)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에는 이를 召集하고 委員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는 在籍委員 3分の2以上の 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條 (委員의 責任) 委員은 그職務에 關하여 知得한 機密을 漏泄하거나
其他 試驗의 公正을 阻害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 (委員會事務의 處理) ① 委員會의 庶務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
하여 幹事1人和 書記2人을 둔다

② 幹事는 免許擔當警衛로 補하고 書記는 免許에 對한 庶務를 取扱하
警査 또는 巡警으로 補한다

第9條 (手當支給) 筆記試驗問題의 出題 試驗全般에 關한監視 答案紙의 採
點을 爲하여 職務에 從事한 委員에게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에게는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0條 (運營細則) 이 規則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이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함

서울特別市 警察支署 및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制定의 件中 改
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599號

서울特別市 警察支署 및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制定의 件中 改
正規則

警察支署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 制定의 件中 다음과 같이 改
正한다

名稱變更書

管轄署	名 稱	
	新	舊
東大門署	昌德宮 派出所	昌德宮 支署
永登浦署	五峰 派出所	五峰 支署
◇	陽東 派出所	陽東 支署
◇	大林 派出所	大林 支署
◇	新東 派出所	新東 支署
◇	梧柳洞 派出所	梧柳洞 出張所
城東署	大旺 派出所	大旺 支署
◇	彦州 派出所	彦州 支署
城北署	三陽 派出所	三陽 支署
◇	長位 派出所	長位 支署
◇	孔陵 派出所	孔陵 出張所
清涼里署	面牧 派出所	面牧 支署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9월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규칙제600호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법제 심의 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내무국장”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特別市訓令第223號

警 察 局 長
警 察 署 長
消 防 署 長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西紀 1966年 9月 3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改正

서울特別市 警察署 및 消防署 事務分掌規程中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搜查班”을 “庶務班”으로하고 “搜查班” 다음에 “取調班”을 挿入한다

同 條 “搜查班”을 “庶務班”으로하고 “搜查班” 다음 “庶務” 削除한다

同 條 “搜查班” 第十一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十一 告訴 告發 認知事件 授受 및 下命에 關한 事項(各班別 下命限)

同 條 “搜查班” “記錄”을 削除하고 “搜查班” “記錄” 第一 다음과 같이 한다

十二 記錄室 運營에 關한 事項

同 條 “搜查班” “鑑識”을 削除하고 “搜查班” “鑑識”

第一號 및 第二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十三 被疑者 寫眞管理에 關한 事項

十四 現場鑑識活動에 關한 事項

同 條 “搜查班” “鑑識” 第二號 다음 欄에 “取調班”을 挿入한다

同 條 “搜查班” “民願取調”를 削除하고 “民願取調” 第二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二. 犯罪搜查取調 및 事件記錄作成에 關한 事項

同 條 “搜查班” “一般取調” 및 第一號 一般事件(刑法 및 特別法犯) 取調에 關한 事項”을 削除한다

同 條 刑事第一班 第三號 “贓物搜查의 專權 및 手配에 關한 事項”을 削除 하고

同 條 刑事第三班에 第三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三. 贓物搜查의 專權 및 手配에 關한 事項

附 則

이 規程은 1966年 10月 4日부터 施行한다

사 령

○서기 1966년 9월 1일

김 관 옥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산업국 상무과 근무를 명함

김 건 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수도국 수원과 근무를 명함

충남대덕군 전 만 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사서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공보실경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유 근 용

경적을 면함

(22) 사 명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박	희	중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강	덕	기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의
	내무국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최	용	운
공보실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사	신	정	대
지방보건기과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기사	윤	공	덕
위생시험소 세균혈청과장에 보함				
지방보건기과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위생시험소위생 과학과장에 보함				
	서산군	김	상	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보건사회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	송	병	종
농림부 진출을 명함				
	토목시험소 토목기과	김	진	우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토목시험소 토질과장에 부함				
	동부건설사업소 토목기과	정	필	현
지방토목기과에 임함				
동부건설사업소장에 보함				
	재무국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임	병	도
본직을 면하고 겸직에 전임함				

재무국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경	필	호
본직을 면하고 결직에 전입함			
영등포구보건소점성복구 지방행정사무관	최	종	필
본직을 면하고 결직에 전입함			
강원도 지방재경주사보	정	병	덕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재경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산업국 양정과 근무를 명함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라	복	균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	손	윤	익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사보	민	단	식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기계기사보	최	성	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의2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탁	화	식
노동청 진출을 명함			
	허	만	섭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재무국 회계과 근무를 명함			
	정	경	화
지방약무기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2일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토목기정	주	우	권
시설부기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24) 사 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장에 보함

◎서기 1966년 9월 3일

종로구보건소 지방재경사무관 조 태 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5일

영동포병원 지방약무기사 이 영 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0일

감사과장 행정서기관 손 석 모

기획관리관 직무대리에 보함

관광과선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관 영

기획관 직무대리에 보함

인사과전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원

법무관 직무대리에 보함

총무과통계계장 지방재경사무관 박 창 권

통계관 직무대리에 보함

관리과 기계지원 조 병 울

체신부 진출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3일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기계지원보 한 상 덕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박 재 식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5일

윤 두 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예산과경감사와 지방조무수(타자) 박 미 자 기획관보좌를 명함	행정과 지방조무수(타자) 박 종 담 보건사회국 사회과 근무를 명함	경 용 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사세주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박 명 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관광운수국차량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제 호	
양평군 전출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7일	김 이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내무국 인사과 보임제장에 포함	감 제 양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소송담당관에 포함	박 수 복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26) 사 명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호봉을 급함

내무국 감사과 제2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이 규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내무국 총무과 관리계장직무대리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최 중 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 경 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0일

안 경 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수의원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근속가봉월 30원을 급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최 상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관광운수국 운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22일

보육병원 지방행정서기보 이 중 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토목시험소 지방행정주사	안	년	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8일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하	인	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기 1966년 9월 1일			
사회과점청소과 지방행정서기	이	재	준
결직을 면함			
북선동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김	창
			순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창	상
노해출장소 근무를 명함			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황	상
노해출장소 근무를 명함			선
◎서기 1966년 9월 1일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배	종
7호봉을 금함			수
마포구청소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권	등
7호봉을 금함			지
서교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1일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劉	相
			喆

(28) 사 명

한강로3가동 근무를 명임

◎서기 1966년 9월 5일

서신동 지방행정서기보 尹 基 文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암동 지방조무보조수 李 忠 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이 욱 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이 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보 김 정 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5일

문계동 지방행정서기보 鄭 基 元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빙고동사무장 지방행정주사 吳 鳳 甲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7일

삼선계1동 지방행정서기 조 용 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8일

이태원1동 지방조무보조수 閔 炳 再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효로1가동 지방조무보조수 禹 東 益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9일

서계동 기관부공무원 奇 鎬 老

기한부만료로 인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행정서기보 **金 秀 男**

지방공무원법 제65조 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을 명함

원효로2가동사무장 지방행정주사 **金 明 俊**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0일

노해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金 병 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2일

원효로1가동 지방행정서기보 **李 昌 載**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15일

박 종 승

기한부 공무원(유영재의 병역 의무·기간중)을 명함

5급 율류 조건부 호봉(월수당)을 급함

송천동 근무를 명함

이 형 호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구로 2동 근무를 명함

정 제 열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 1동 근무를 명함

김 상 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 0) 사 령

양평 1동 근무를 명함	이	용	규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량진동 근무를 명함	김	행	진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대림동 근무를 명함	김	형	국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신림동 근무를 명함	성	욱	래
조건부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노량진동 근무를 명함	이	덕	술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영등포 2동 근무를 명함	이	중	욱
조건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흑석 2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9월 19일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문	철	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기 1966년 9월 27일			
성북구남암동 지방행정서기	이	용	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0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1. 실 시 목 적 건전한 낙농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을 검역함
- 2. 실 시 지 역 서울특별시 일원
- 3. 실시대상의 가축명 유우
- 4. 실 시 기 간 1966년 9월 20일 } 1개월간
 1966년 10월 20일 }
- 5. 기 타 검역기간중 가축방역관이 각 사육장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1068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봉천	84-4	임야	0.6211	0.6211	0.6211	-	서대문구 갈현동 23-252	경흥진

2. 해제사유

본 신청지는 1937년도에 사방 지정한 임야로서 산림조성보다 타용도로 이용함이 효과가 더 큰것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69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육석	79-89	대	0.0306	0.0306	0.0306	0	서울특별시성 동구하왕십 리동산 12	강덕성

2. 해제사유

본대지는 1954년도에 사방지로 지정하고 1953-1954년도에 사방 시공한 지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이 타당하여 지정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0호

사방 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 시설지를 해제 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시설	해제	간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면적	면적
영등포	양화동	4-1	임야	1.7000	1.7000	0.6914	1.0016	경기도인천시 인현동 4	장석형
◇	◇	4-4	◇	0.1500	0.1500	0.1500	◇	◇	◇
◇	◇	4-11	◇	0.2800	0.2800	0.2800	◇	◇	◇
계		3필		2.1300	2.1300	1.1214	1.0016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5 및 1964년도에 토사유출방지와 도시미화를 위한 사방시설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에 외거 산림이외의 타용도로의 이용도가 큼으로 사방시설의 목적 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1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갱신하였음을 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 번호	공장명	공장 소재지	대표자		사료의			사료의성분량	유효기간
			주소	성명	종류	명칭	용도		
	서부사료	마포구	서백문	구	산란계	산란용	산란계	조단백 15이상 조지방 2.5이상	66.9부터 68.9까지
32	공사	서교동 166의718	창천동 718-42	성규봉	배합 사료	배합 사료	용	조성유 7이하 조지방 11이하	

◎서울특별시고시제1073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3 4) 고 시

서기 1966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1. 공사시공로선 돈암동—수유리간 도로포장공사(3차)
2. 공사의종류 포장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10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0월 30일
5. 총공사비 7,320,000원
6. 부담금총액 4,758,000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74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1. 공사시공로선 제2한강교—물래동간
2.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6월 19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0월 15일
5. 총공사비 26,819,667
6. 부담금총액 17,432,783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75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1. 소재지

입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성북	정능	87-120	임야	0.0620	0.0620	0.0620	0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가100	손영을
		87-129	◇	0.1000	0.1000	0.1000			
계	2필			0.1620	0.1620	0.1620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 사방지경지로서 지피(地被)가 안정된 사업성공지로서 지경의 목적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6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 지경지를 해제고시한다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숙

1. 해제지

입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영등포	상동	66-9	임야	1.6729	1.6729	1.6729	0	종로구 종로3가 40	이정경	
		66-10	◇	1.4316	1.4316	1.4316				0
		66-12	◇	0.7108	0.7108	0.7108				0
계	3필			3.8223	3.8223	3.8223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6년도에 사방 지경지로 지정하고 1956—1957년도에 사방 시공하여 지피가 안정된 지대로서 타용도로 이용이 불가피함에 지경의 목적달성으로 해제함

◎서울특별시고시제1077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 1. 공사시공로선 서대문—홍제동간
- 2. 공사의종류 홍제동—녹번동 간 도로 포장공사
- 3. 착공년월일 1966년 6월 20일
- 4. 준공년월일 1966년 8월 14일
- 5. 총공사비 9,913,681원
- 6. 부담금총액 6,443,892원
-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78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 1. 공사시공로선 홍제동—녹번동간
- 2.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2차)
- 3. 착공년월일 1966년 8월 31일
- 4. 준공년월일 1966년 10월 19일
- 5. 총공사비 3,138,980원
- 6. 부담금총액 2,040,337원
-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79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홍제동—죽번동간
2.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제3차)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9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9월 30일
5. 총공사비 4,144,772원
6. 부담금총액 2,694,101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0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원효로—중림동간
2.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제1차)
3. 착공년월일 1966년 7월 30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1월 27일
5. 총공사비 18,482,296원
6. 부담금총액 12,013,492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1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

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공사시공로선 원효로—중림동간 도로
2. 공사의종류 포장공사 (계2차)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10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11월 30일
5. 총공사비 11,625,927원
6. 부담금총액 7,556,852원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2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1. 공사시공로선 고대앞—홍능간
2. 공사의종류 도로포장공사
3. 착공년월일 1966년 9월 6일
4. 준공년월일 1966년 9월 30일
5. 총공사비 4,742,150원
6. 부담금총액 3,082,397.⁰⁰
7. 부과구역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혜구역 일원
8. 기타사항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3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위치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구 별	동사무소명	변 경 위 치	종 전 위 치
서대문구	안산 제2동	홍제동 103의 10	홍제동 176의 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42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매각입찰공고

1. 건 물 표 시 서대문구 불광동 287의8.9 지상 세면벽돌조와줄 링가
전 사무실 1동 건평24평
2. 입 찰 일 시 서기 1966년 9월 8일 10시
3. 입 찰 장 소 당시 재무국 관재과
4.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5. 입 찰 등 록 서기 1966년 9월 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 찰 보 증 금 입찰금액의 1환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
표를 납부한다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음

서기 196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43호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 반대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별지 환지 확정 지정서 및 도면과 같이 환지 확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

별지 환지 확정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과 및 영등포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음

서기 196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44호

건설부고시 제2112호 (서기 1965년 12월 13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제3한강교 가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49호(서기 1966년 3월 24일)를 다음과 같이 정경 공고한다

- 1. 공 사 명 제3한강교 가설공사
 - 2. 토지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 3. 공고기간 서기 1966년 9월 7일 (10일간)
서기 1966년 9월 16일
- 서기 1966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土 地 調 査

番 號	分割前表示		地 目	分割後表示 (收用)		所 有 者		關 係 人		
	地番	坪數		地 番	坪數	住 所	姓 名	住 所	姓 名	備 考
1	신사동 410-1	487	田	410-36	235	계기동 13-52	李德出			
						인현2가125	李鼎奎			
2	410-7	634	〃	410-38	313	오장53-2	張夢仁			
3	409-2	1,171	〃	409-3	58	인현2가125	李鼎奎			

4	410-25	625	410-25	73	쌍림동44-1	金英海			
5	408-5	351	408-7	51	충무로5가7	張在哲			
6	408-3	36	408-6	13	◇	◇			
7	406-2	71	406-8	12	원효로 1가 17-2	金德源			
8	404-2	42	404-7	13	◇	◇			
9	405-1	203	405-1	144	순화동 164 -2	高德姬			
10	404-6	466	404-8	55	◇	◇			
11	399	767	399-2	39	용산갈일75	金東柱	충경로75 채부 20	농협중앙 회합동	근저당 1,400,000 16,000,000 750,000
12	405-2	2,216	405-2	521	신사동 196	李明福	종로 1가 36	시농협 합동조합	근저당 560,000
13	412	2,846	412-1	70	신사동 177	尹相煥			
	計			1,597					

◎서울특별시공고제145호

제도재산매각재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한다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9월 12일 10:00
3. 입찰등목 서기 1966년 9월 10일 12:00까지 시세 국제 납세필증
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계과에 등록하여야함
4. 재산설명및종합 서기 1966년 9월 10일 10:00 등록장소에 집합하여
현장종합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함
6.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7.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이상 정기에금을 하
여야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완
 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후 30일 이내에 매대물건을
 완전 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 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관계과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것은 이곳
 에 문의하시얏

9. 재산의 표시

번 호	재 산 의 표 시	비 고
1	광장선케조및 동부숙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 관계과 에 별도공시함
2	각종객화차 25대와 부분품 20종 (폐차 및 고장차량 포함)	
3	비품집기류 274점	

의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서울특별시공고제146호

도로운송차량의 임시검사 실시

시내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검사를 실시키로 되었
 으니 소정기간내에 빠짐없이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가. 영업용 화물 자동차
- 나. 자가용 화물 자동차
- 다. 급행버스(임시검사 수검차량제외)
- 라. 완행좌석버스

2. 시행기간

가. 영업용 자동차

(1) 서기 1966년 9월 15일—서기 1966년 10월 20일

서기 1966년 9월 15일 현재 계속검사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된 차량 및 서기 1966년 10월 15일 내에 3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으로서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2) 서기 1966년 10월 21일—서기 1966년 12월 20일

전항이외의 영업용 자동차로서 계속검사를 받고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자가용 화물 자동차

(1) 서기 1966년 9월 15일—서기 1966년 10월 20일

서기 1966년 9월 15일 현재 계속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및 서기 1966년 10월 15일 내에 6개월이 경과되는 차량으로서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2) 서기 1966년 10월 21일—서기 1967년 3월 20일

전항이외의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서 계속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5일 이내

3. 실시요령

자동차 계속검사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한다

4. 본인점검사를 기간내에 수검치 않은 차량은 도로운송 차량법 제51조 2항에 따른 처벌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함

서기 196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47호

건설부 고시 제1970(1965. 11. 8)로 사업계획 실시 인가된 생산 토지구획정리 지구 인접 토지중 다수의 토지는 사업 시행상 본 사업 지구로 편입하여 동 지구 사업 계획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간 편입지구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기

- 1. 사업 계획 별책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계획서와 같음
- 2. 편입된지역 (내용 별책)

지 구 별	동 명	면 적	비 고
성 산 지 구	서대문구 성산동 일부 마포구 망원동 일부	약 51,000	

◎서울특별시공고제148호

수도재산매각제입찰공고

다음 표시 재산을 지방 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 공개함

- 1. 입찰 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 2. 입찰 일시 서기 1966년 9월 24일 10:00
- 3. 입찰 등록 서기 1966년 9월 23일 12:00까지 시세 국제 납세필 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재과에 등록하여야함
- 4. 재산설명및종란 서기 1966년 9월 23일 14:00 등록장소에 집합하여 현장종란과 동시에 설명함
-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함
- 6.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 7. 매 각 조 건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이상 경기에금을 하여야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입

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완
납하여야하며 대금완납후 30일 이내에 매매불건을 완
전 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관제과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 것은 이
곳에 문의하시말

9. 재산의 표시

번호	재 산 의 표 시	비 고
1	광장선(상후원-광장리간)제조및 동부속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관제과에 별도 공시함
2	각종 객화차 25대와 부분품 20종 (폐차 및 고장차량 포함)	
3	비품집기류 274점	

위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49호

서기 1962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698호로서 환지처분한바 있는 지
2중양도지 구획정리 남대문(남·북창) 지구중 환지처분 일부에 대하여 별
환지 변경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에 대한 조서와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사무과 및 중구청 건설
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0호

건설부 고시 제2493호 (서기 1966년 6월 21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이문동지내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사명 이문동 지내 도로공사
 토지의 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土 地 調 査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평수	소유자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5-204	답	224 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29 박문상
2	〃	164-8	〃	102	〃
3	〃	164-6	〃	11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4	〃	240-4	전	65	동대문구 이문동 162 서진순
5	〃	238-2	답	184	〃 330 박철성
6	〃	237-7	〃	223	〃 321 인부성
7	〃	237-9	〃	66	〃 33 황용순
8	〃	237-11	대	297	〃 산4 우홍용
9	〃	220-28	답	21	동대문구 장위동 영등포구 상도동 324-2 엄영조
10	〃	220-22	〃	43 ⁸	동대문구 이문동 161 한홍천
11	〃	220-12	전	23 ⁸	성북구 석곶동 213 오호용
12	〃	220-25	〃	15	〃 213 오호용
13	〃	220-18	답	99	동대문구 이문동 284-3 인부영
14	〃	220-11	전	52	〃 159 김호천
15	〃	217-2	답	197	〃 149 이철성
16	〃	216-2	〃	193	〃 330 인한갑
17	〃	215-1	〃	27 ⁸	귀속재산
18	〃	214-1	〃	232	동대문구 이문동 159 최진문

19	동대문구 이문동	213-1	◇	269	동대문구 계기동	67	조계옥
20	◇	212-6	◇	12	◇		
21	◇	212-2	전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30	인한갑
22	◇	212-1	답	48	◇	337	인한용
23	◇	209-1	◇	1327	송인동 석곶동		吉田四成
24	◇	208-1	◇	147 ¹	중구 무교동	13	이상옥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곶동	42-1	◇	28	동대문구 이문동	161	한홍섭
26	◇	92-8	◇	40	◇	175	최용학
27	◇	92-5	◇	26	◇	175	최용학
28	◇	92-3	◇	48	◇		
29	◇	92-6	◇	5	◇	169	고일동
30	◇	94-1	◇	81	◇	294	김점용
31	◇	88-3	◇	157	성북구 석곶동	178	박삼남
32	◇	83-1	◇	52	동대문구 이문동	232	김덕연
33	◇	82-1	◇	260	◇	217	전영극
34	◇	81-1	◇	14	◇	294	김점영
35	◇	80-1	◇	49	성북구 미아동	405	신상걸
36	◇	79-1	◇	101	동대문구 이문동	257-86	박장호
37	◇	78-1	◇	75	성북구 장위동	69	홍삼록
38	◇	104-1	◇	111	◇ 석곶동	230	이봉래
39	◇	105-1	◇	61	동대문구 회기동	83	배금은
40	◇	106-1	◇	42	성북구 석곶동	356	고범은
41	◇	110-1	◇	67	◇	175	한지룡
42	◇	111-1	◇	10	◇	178	박기영
43	◇	112-1	답	48	◇	343	정기근
44	◇	113-1	전	264	◇	371	박재연
45	◇	116-1	◇	1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엄봉준
46	◇	114-1	답	236	성북구 장위동	47	민용섭
47	◇	115-1	전	11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엄형중

(4 8) 공 고

48	성북구 석곶동	137-1	전	6	동대문구 창신동 144-2 염해중
49	◇	135-1	◇	124	종로구 안국동 9 윤자현
50	◇	134-1	◇	43	성북구 아남동5가108-22장영모
51	◇	167-2	답	40	중구 무교동 13 이상욱
52	◇	167-1	◇	24	국 유 지
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6-209	대	23	동대문구 청량리 205-1 이동희
54	◇	255-2	전	50	◇ 205-1 이배근
계					

◎서울특별시공고제151호

건설부 고시 제444호(서기 1963년 7월 11일)로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홍제동-녹번동간 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공 사 명 홍제동-녹번동간 도로확장공사
2.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별지조서와 같음)
3. 공고기간 자 서기 1966년 9월 19일 (7일간)
지 서기 1966년 9월 25일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개산의 표시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서대문구 녹번동	53-25	토	28	녹번동 53-20	金採道			
2	◇	55-26	◇	21	◇55-19	林順貞	중구남대 문로2가	韓國産業 銀行	
3	◇	55-27	◇	29	마포구아 현동447	韓洛九	◇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구 조	층면적	수용 면적	소 유 자		관 제 인		비고
	동 명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서대문구 누번동	53-20	세멘트 조와집	19 ⁵⁴ 지하3 ⁰⁰	19 ⁵⁴ 지하3 ⁰⁰	누번동 53-20	金探道			
2	〃	55-19	세멘트와 조와집	16 ⁵⁰	8 ⁰⁰	〃 55-19	林順貞	중구남대 동로 2가	韓國產 業銀行	
3	〃	65-20	〃	15 ⁰⁰	15 ⁰⁰	마포구아 현동 447	韓洛九	140-1	〃	〃

◎서울특별시공고제152호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시험 실시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회 가축인공 수정사 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험일자

가. 학술시험 서기 1966년 10월 27일

나. 실기시험 서기 1966년 10월 28일

2. 시험장소 농협중앙회 가축인공 수정소

(서대문구 불광동 산42번지)

3. 시험과목

축산수의 법규,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가축인공수정 및 실기

4.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1개월 이상 가축인공 수정 강습을 이수한자

5. 응시절차

가. 원서 접수기간

자. 서기 1966년 9월 26일 지. 서기 1966년 10월 15일 (20일간)

나. 원서 교부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산업국 농경과

다. 제출서류

(50) 공 고

- 1) 용시원서(소정양식) 1통
- 2) 이 력 서 1통
- 3) 학력증명서 1통
- 4) 건강진단서 1통
- 5) 신원증명서 1통
- 6)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통
- 7) 가족인공 수경 강습회 수료증 또는 인공수정교육필증 1통
- 8) 사진(경합판) 2매

라. 응시료 1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6. 기타 자세한 것은 당시 산업국 농경과에 문의할것
위 광고함

서기 1966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3호

내무부 고시 제23호(52. 3. 25)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광희동 지내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코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사명 이문동지내 도로확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은 별지와 같음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3-2	대	0.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13 정운교
2	〃	14-2	〃	27.7	〃 14 이대식
3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96-9	〃	55	중구 광희동 2가 96 서인형

4	중구 광희동 2가	96-8	대	39.5	중구 광희동 2가 96	서인형
5	〃	96-10	〃	1.3	〃 96-2	김갑기
6	〃	95-2	〃	5.3	〃 95	신경석
7	〃	98-2	〃	22	〃 98	이건호
8	〃	93-2	〃	18.0	성북구 종암동 3-72	김영환
9	〃	91-2	〃	14	① 중구 회현동1가142-17 최종철 ② 〃 강동동1가11-1 윤옥순	
10	〃	90-3	〃	4.4	광희동 2가 90-3	최종철
11	〃	83-1	〃	17	〃 83	김종철
12	〃	75-2	〃	3.7	〃 75	박시철
13	〃	74-2	〃	4.3	〃 73	홍승태
14	〃	65-3	〃	9.5	〃 65-1	박준석
15	〃	56	〃	67.6	충무로 5가 67-1	村田保
16	〃	13-4	〃	0.4	소공동62-5주석회사한국상업은행	
17	〃	55-3	〃	33.6	국 유 지	
18	〃	55-4	〃	0.2		
19	〃	12-5	〃	7.3	중구 광희동 2가 12-3	강인남
20	〃	105-3	〃	0.4	〃 2가 105-1	오인영
21	〃	173-2	〃	1.7	〃 173-1	이남용
22	〃	192-2	〃	0.1	〃 192	김단복
23	〃	193-2	〃	5.3	국	
24	〃	239-1	〃	21.0	중구 광희동 2가 239	함원너
25	〃	246-1	〃	25.1	〃 246-1	황두연
26	〃	250-1	〃	72.4	〃 251-1	백광업
27	〃	251-1	〃	3.5	〃 2가 251-1	하량근
28	〃	252-1	〃	8	〃 2가 252-1	박양순
29	〃	258-1	〃	68.0	〃 2가 158	이보영
30	〃	260-2	〃	4.7	〃 2가 260-2	노영문
31	〃	262-1	〃	10	〃 2가 262-1	正木東淳

(5 2) 공 고

32	중구 광희동 2가	323-1	대	24.5	중구 광희동 2가 323-1 손옥근
33	〃	317-1	〃	2.1	〃 2가 317-1 조영근
34	〃	97	〃	39	〃 2가 96 김갑기
35	〃	97-1	〃	1.7	〃 2가 96 김갑기
36	〃	58	〃	88	〃 2가 96 김갑기
37	〃	58-1	〃	1.3	〃
38	〃	99	〃	25	성동구 신당동 391-9 손창열
39	〃	89-1	〃	5	중구 광희동 2가 89 竹內岩吉
40	〃	260-3	〃	20.5	〃 2가 260-3 최홍순
41	〃	245	〃	28	서대문구 홍제동 82-32 황두연
42	〃	244-1	〃	29	조선총독부
43	〃	90-2	〃	10	① 중구 회현동1가14-17 최중철 ② 〃 강릉동1가11-7 윤옥순
44	〃	43-6	〃	2	중구 광희동 2가 43-6 채수배
45	〃	53-2	〃	67	〃 2가 53-2 장인택
46	〃	362-2	〃	6	〃 인현동 2가 57 조동윤
계		46필지		884.7	

◎서울특별시공고제154호

시유건물(철거 조건부)매각입찰공고

1. 건 물 표 시
 - 1) 중구 을지로7가 141 대 18.5평 위 지상 목조와즙 2제
건 사무실1동 진땡1층 12.83평 2층 10.83평
 - 2) 종로구 사직동 262-88 지상목조와즙 평가전주택1동
진땡20평
 - 3) 성동구 향당동 196-25 위지상 목조와즙 2제건 분가
1동 진땡1층 21평 2층 21평
 - 4) 성동구 신당동 136-3 지상목조 와즙 평가건 사무소
1동 진땡28.2평
2. 입 찰 일 시 서기 1966년 9월 28일 10시

- 3.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관제과
- 4.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5. 입찰등록 서기 1966년 9월 2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서명, 국세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
 표를 납부한다
- 7. 철거및대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겠음

서기 196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5호

시영 버스 종업원 모집 공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참된 수도 교통을 만들기 위하여 시영 버스를 창업함에
있어 이에 일할 종업원을 다음요령에 의거 모집함

서기 196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기본자격

시영 버스 사업의 근본 취지에 호응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머슴으로서 참된 시민 교통 건설에 온 정열과 힘을 쏟을수 있는 확고한 신
념과 정신 자세를 갖춘자

2. 모집 직종및 일반 자격

모 집 직 종	모집인원	용 모 자 격
자동차 운전원	〇〇〇명	자동차 1종면허 소지자로서 색맹이 아닌 만20세 이 상의 남자
자동차 정비공	〇〇명	자동차 정비 경험이 풍부한 만23세 이상 45세 미만 의 남자

자동차정비보조원	○○명	자동차정비 경험이 있는 만18세이상25세미만의 남자
차장	○○○명	용모단정한 만17세이상 20세미만의 미혼여자
지도원	○○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경비원	○○명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배차원	○○명	〃
수위	○명	국민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청부	○명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45세 미만의 남자
청소부	○○명	〃
타자원	○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20세 이상 25세 미만의 타자에 능숙한 미혼여자
사환	○명	중학교 2년이상의 학력을 갖인 만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

단, 병역 해당자는 병역 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라야한다

3. 제출서류

가. 소경 응시 원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운전원은 면허증 사본 1통 (접수후 원본 내조함)

정비원은 경력 증명서 1통

군경 유자녀는 원호청 발행 증명서 1통

라.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마. 응시 수수료 100원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4. 원서 접수 기간

서기 1966년 9월 24일 부터 서기 1966년 9월 28일 (4일간)

5. 원서 접수 장소

당시 관광운수국 운수사업과

6. 채용 방법

가. 면접시험 자동차 운전원, 정비공, 차장, 청소부, 수위, 청부, 사환, 지도원, 배차원, 경비원, 타자원

- 나. 필기시험 지도원, 배차원
 - 다. 실기시험 타자원
7. 시험 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실 기 시 험	1966. 10. 1	성 동 고 등 학 교
면 접 시 험	1966. 10. 2	◇

8. 합격자 발표
 서기 1966년 10월 8일 시청 후경에 게시 공고함
9. 기 타
- 가. 합격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후 채용 하되 교육성적이 불량한자는 합격을 취소 한다
 - 나. 자동차 운전원은 특별 우대 한다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라. 합격자는 시영버스 운행계획에 따라 순차로 채용 배치함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할것

◎서울특별시공고제156호

시유재산 매각 제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 1항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0월 4일 10시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0월 1일 12시까지 시세및 국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제과에 등록하여야함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입찰하여야 함
5.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6.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정기에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서 3개월 분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당시소유인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당시가 철거 할때까지 원형을 변경하거나 철거 요청을 하지 못함

(다) 기타 지상물 명도는 일체 매수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재산매각후 평수에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7. 계약조항은 당시 판재파에 비치되어 있으니 상세 한것은 이곳에 문의하 시압

재 산 의 표 시

번호	구 동 번 지	지목	평 수
12	동대문구 창신동 444-1	철	6.00평
14	◇ 444-3	◇	32.00◇
16	◇ 445-1	◇	14.00◇
18	◇ 446-5	◇	7.50◇
19	성동구 마장동 533-3	◇	181.00◇
20	◇ 행당동 192-23	◇	188.00◇
29	◇ 41-3	◇	67.00◇
30	◇ 77-2	◇	56.00◇
31	◇ 82-2	◇	63.00◇
32	◇ 145-1	◇	37.00◇
33	◇ 148-1	◇	5.00◇
34	◇ 168-9	◇	108.00◇
35	◇ 158-2	◇	200.00◇

36	성동구 행당동	169-1	㎡	30.00
37	◇	산8-20	◇	120.00
38	◇	산22-3	◇	100.00
43	◇	홍익동 192-21	◇	153.00
47	◇	미장동 533-2	◇	161.00
48	◇	화양동 110-2	◇	122.00
49	◇	111-3	◇	697.00
51	◇	112-1	◇	18.00
52	◇	112-2	◇	71.00
53	◇	114-2	◇	122.00
54	◇	115-2	◇	168.00
55	◇	119-2	◇	40.00
56	◇	121-1	◇	6.00
57	◇	132-1	◇	28.00
58	◇	135-4	◇	754.00
59	◇	148-2	◇	247.00
60	◇	모진동 1-2	◇	3.00
65	◇	131-2	◇	80.00
67	◇	132-2	◇	50.00
70	◇	135-1	◇	26.00
71	◇	117-3	◇	54.00
72	◇	136-2	◇	19.00
73	◇	136-3	◇	7.00
79	◇	197-2	◇	19.00
100	◇	구의동 439-2	◇	0.00
105	서대문구 응암동	244-116	㎡	225.00

우 공고함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7호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른 전차 일부 운행계통 변경 공고
세종로 지하도 공사 준공에 따라 전차 일부 운행계통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사항을 공고 함

1. 변경 운행 계통

가. 부환 운행 계통

동대문<종로>마포
 <울지로>

청량리~종로~영천

왕십리~울지로~영천

나. 폐지 운행 계통

돈암동~서울역

마 포~세종로

영 천~세종로

마 포~서대문

청량리<종로>왕십리
 <울지로>

2. 변경 운행 일시

서기 1966년 9월 30일 17:30부터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58호

서기 1966년 총인구조사실시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시민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오는 10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총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가정에서 먼저 식구수를 알아야 그 식구에 맞추어 식량을
준비하고 또 의복이나 학비를 마련하는 것처럼 국가나 서울의 모든 시책도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수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만 합리적인 재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이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 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 할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나 기타 개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조
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6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159호

수도재산(시설)매각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0월 10일 10:00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0월 8일 12:00까지 시세국세납세 필
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제과에 등록하여야함
4. 재산설명및총람 서기 1966년 10월 8일 14:00 등록장소에 집합하여
현장총람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100이상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7.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100이상 정기에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고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완
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후 30일 이내에 매매물건을 완
전 철거하고 그 장소를 정리하여야 함
8. 계약조항과 재산세목은 당시 관제과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것은 이곳
에 문의하십시오
9. 재산의 표시

번 호	재산의 표시	비 고
1	광장선(상후원-광장리간) 제조 및 동부측 시설	재산세목은 당시 재무국관제과에 별도 공시함

(80) 광 고

위 공고 함

서기 196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고 관계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161호

서기 196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시 제756호로서 지정한 서울 도시계획사업 면목 토지구획정리 지구 환지예정지를 별지 도면 및 조서와 같이 일부 변경 지정한다

별지 도면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동대문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 196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광 고

제3회 물중 위험물 취급주임 자격시험 합격자

危險物取扱主任資格試験合格者

受驗番號	姓 名	受驗番號	姓 名	受驗番號	姓 名
2002	張 潤 集	2004	李 承 福	3001	金 通 年
2003	金 大 中	2005	李 熙 重	3002	全 中 斗

3003	朴	殷	權	4028	趙	晟	皓	4070	李	起	顯
3005	申	泳	駿	4029	宋	龍	鎭	4071	趙	二	衡
3008	韓	明	基	4030	金	容	炳	4072	金	鉉	異
5001	康	宇	仁	4031	趙	元	彬	4073	河	萬	龍
6001	姜	珍	圭	4032	黃	重	泰	4074	權	錫	連
6002	李	正	一	4033	趙	英	世	4075	安	慶	燦
6003	康	勝	一	4035	金	用	彬	4077	金	正	中
6004	李	炳	潤	4036	李	鍾	海	4078	李	相	弼
4001	金	昌	烈	4040	權	正	植	4079	尹	鍾	在
4002	尹	在	德	4042	沈	忠	基	4080	朴	殷	善
4003	崔	相	龍	4044	朴	漢	英	4081	白	東	俊
4004	李	康	熙	4045	韓	彥	錫	4084	李	稷	弼
4005	宋	福	煥	4046	朴	大	傑	4085	朴	孟	鎔
4006	金	京	鎭	4047	金	祥	玉	4090	朴	丙	緒
4008	李	炳	九	4050	李	元	世	4091	朴	清	吉
4009	趙	元	基	4051	柳	兢	烈	4092	李	鍾	九
4010	黃	鍾	顯	4052	朱	昇	煥	4097	文	忠	懷
4011	韓	熙	洙	4053	朴	崇	基	4099	李	載	晚
4012	李	益	準	4054	姜	求	翰	4100	李	器	雲
4013	李	應	坤	4055	李	寬	燮	4102	李	相	明
4015	洪	性	煥	4056	閔	世	烈	4104	金	俊	浩
4016	曹	圭	官	4059	黃	明	俊	4106	張	熙	星
4019	李	慶	植	4060	崔	聖	鐵	4110	方	允	圭
4021	宋	炳	勳	4061	俞	義	根	4112	金	聖	駿
4022	韓	昌	洙	4062	閔	長	榮	4113	李	壽	永
4023	元	慶	培	4063	崔	學	均	4114	權	五	基
4024	李	炳	瞻	4066	朴	龍	鶴	4115	朴	光	國
4025	白	昌	珍	4068	洪	志	善	4116	李	在	先
4027	金	淳	天	4069	辛	根	夏	4117	崔	高	泳

4118	元	裕	詰	4159	奇	宇	奎	4198	金	鎮	弘
4119	金	公	德	4160	盧	健	郎	4199	梁	成	洽
4124	金	龍	培	4161	金	又	石	4200	丁	大	鐵
4125	魯	聖	雄	4162	宋	智	鎮	4205	金	貴	煉
4126	元	永	寬	4163	朴	美	瓊	4206	朱	哲	均
4127	李	寅	鮮	4165	黃	琬	在	4207	南	千	麟
4128	林	宗	源	4166	金	豐	根	4208	金	洋	二
4129	金	正	權	4167	李	在	根	4209	金	柄	日
4130	鄭	錡	元	4168	李	真	守	4210	鄭	健	館
4131	趙	貴	夏	4171	曹	勝	洽	4211	李	植	學
4133	吳	俊	煥	4172	襄	甲	淳	4212	鄭	植	浩
4134	金	東	奎	4173	嚴	觀	日	4213	金	永	蘇
4135	黃	鎰	恒	4175	許	曰	錄	4215	李	德	興
4136	徐	承	源	4176	李	和	永	4216	孫	玄	東
4137	吳	興	在	4177	奇	宇	甲	4218	金	基	井
4140	崔	得	秀	4179	朴	鎮	俊	4219	李	賡	緒
4142	趙	容	善	4181	黃	圭	天	4220	尹	賡	植
4145	金	榮	植	4182	朴	用	漢	4221	張	亨	玉
4146	宋	萬	源	4184	金	煥	植	4222	宋	亨	雙
4148	李	夢	虎	4185	李	弼	俊	4223	朴	珣	泰
4149	李	祖	熙	4186	崔	洞	儒	4224	權	寧	巖
4150	金	相	鐵	4187	宋	泰	善	4225	朴	性	用
4151	梁	錫	辰	4188	李	東	益	4226	朴	相	湖
4153	康	濟	舜	4189	李	壽	永	4227	丁	石	鐵
4154	尹	相	祿	4190	李	全	旭	4232	金	容	號
4155	金	命	香	4191	李	泰	鍾	4234	高	在	萬
4156	植	五	校	4192	禹	完	植	4235	高	在	根
4157	崔	明	水	4193	禹	相	舜	4238	具	在	會
4158	崔	及	容	4196	盧	伯	麟	4239	金	吉	田

4240	鄭 鶴 魯	4245	鄭 永 雙	4249	吉 瑞
4242	姜 仲 模	4246	宋 仕 榮	4250	許 恒
4243	李 順 興	4247	方 永 泰	計 190名	
4244	金 惠 炯	4248	盧 蔭 哲		

서기 1966년 9월 24일

경 찰 국 장

직인 개각 통보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
가. 직 인 명

서울특별시장의인



나. 개인된 직인사용일자 서기 1966년 10월 4일부터

다. 구직인폐인일자 서기 1966년 9월 30일까지

서기 1966년 9월 30일

총 무 처 장

폐 인 인 형

폐 인 일 자	1966. 9. 30
폐 인 사 유	마멸로 인하여
직 인	계 인
	

직 인 인 형

사 용 개 시 일 . 자	1966. 10. 4
명 칭	서울특별시장 의인
직 인	계 인
